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21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민형배 · 주철현 · 정준호
김문수 · 양부남 · 박지원
최혁진 · 김우영 · 이성운
조승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이용자 신고 접수’를 추가해 신고 공백을 해소하고, 불법도박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있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신고가 기관별로 이원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불법도박에 대한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지된 사행행위를 이용한 도박신고 접수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명시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전반을 통합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5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관한 신고의 접수

제18조의2제1항 중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
2.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

제18조의3의 제목 중 “불법사행산업”을 “불법사행산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시를”을 “감시 및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의 신고를”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불법사행산업 등 감시·신고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불법사행산업”을 “불법사행산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시를”을 “감시 및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의 감시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이 법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등 감시·신고센터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 11. (생 략) ②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관한 신고의 접수</u> 5.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u>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u>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② ~ ④ (생 략)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u> ----- -----. 1. <u>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u> 2. <u>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u>불법사행산업</u> 감시 ·	제18조의3(<u>불법사행산업 등</u> 감시

신고센터 등) ① 불법사행산업의 <u>감시</u>를 위하여 사무처에 <u>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u>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u>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u>의 조직·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u>감시</u>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 신고센터 등) ① ----- <u>감시 및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의 신고를</u>----- -----<u>불법사행산업 등 감시·신고센터</u>-----. ② -----<u>불법사행산업 등</u>----- ----- ----- -----. ③ ----- <u>감시 및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의 감시</u>----- ----- -----. ④ (현행과 같음)
---	--